

의안 번호	제2708호
----------	--------

2026. 1. 29.(목) 10:00
제37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검 토 보 고 서

안건 : 1건(개정안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기은자

목 차

□ 장성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3
--	---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08호
- 제출일자 : 2025. 1. 8.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차상현 의원 외 1명)
- 회부일자 : 2025. 1. 19.

2.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에 관한 담당업무가 일부 미정비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아울러 개정 취지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입안으로 인한 비경제성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팀장 등) 정비

조	제 명	개정대상	비고
1조	장성군의회 장에 관한 조례	제6조	
2조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3항	
3조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30조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0377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380호)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 및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미정비된 사항을 정비하고, 동일하거나 단순한 개정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 안 번호	제2709호~제2713호
--------------	---------------

2026. 1. 29.(목) 10:30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

검 토 보 고 서

안건 : 5건(제정안1, 폐지안1, 개정안3)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기 은 자

목 차

-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7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09호
- 제출일자 : 2026. 1. 14.
- 제출자 : 심민섭 의장 외 1인
- 회부일자 : 2026. 1. 19.

2. 제안이유

- 장성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중복지원 제한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4. 관련법령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 복지법」 제1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10호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6. 1. 19.

2. 제안이유

- 2026년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통보에 따른 국가·지역 현안 사업 등 정원반영으로 업무부담 해소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 도모

3. 주요내용

-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 715명 → 735명 (증 20명)
- 직종·직급별 정원증원 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행	715	371	17	105	46	176
개정	735	373	18	107	46	191
증감	+20	+2	+1	+2	-	+15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국가·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고, 업무부담 완화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11호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문화교육과장)
- 회부일자 : 2026. 1. 19.

2. 폐지이유

-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교육과로 조직개편(2025.1.1.)됨에 따라 별도의 설치·운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 또한, 조례에 규정된 집성관 관련 사항이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교육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별도의 설치·운영 근거가 불필요해진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집성관 관련 사항이 다른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5.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12호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문화교육과장)
- 회부일자 : 2026. 1. 19.

2. 제안이유

-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의 활성화 및 군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기존 유물전시관 운영 조례를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집성관의 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현행)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집성관 재개관에 따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선비문화 활성화 및 군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유물전시관에서 집성관까지 확대하고, 집성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13호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건강증진과장)
- 회부일자 : 2026. 1. 19.

2. 제안이유

- 기본사회의 발전적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요건에 부합한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
- 현행 조례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가 출생아동의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모두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모 모두 도내 거주 요건 미인지 및 부모 중 1인 미전입 상태로 출생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이에 따라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기본사회 시대상 반영을 위해 출생 기본수당을 출생 기본소득으로 명칭 변경
-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건인 보호자(부모 모두)의 도내 거주조건 충족 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 보호자 1인은 출생아동과 함께 계속해서 도내 거주, 다른 보호자

1인은 수당 지급 신청 시기부터 도내 거주 조건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사회 발전 흐름을 반영하여 ‘출생기본수당’ 을 ‘출생기본소득’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생기본수당 지급 요건 중 보호자의 도내 거주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715호~제2717호
----------	---------------

2026. 1. 29.(목) 14:00
제375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

검 토 보 고 서

안건 : 3건(제정조례안 1, 개정조례안 1, 동의안 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재선

목 차

-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장성소방서 북이119지역대 청사신축) 3
-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15호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의회회의장(최미화 의원 외 1명)
- 회부일자 : 2026. 1. 19.

2. 제안이유

- 농어촌민박의 영세한 운영 여건으로 위생·안전·시설 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경쟁력 강화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책무 및 실태조사 등 (안 제3조 ~ 안 제4조)
-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및 신청 등(안 제5조 ~ 안 제7조)
- 심의 및 지도·감독(안 제8조 ~ 안 제9조)
- 지원비용 중단 및 환수(안 제10조)
-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1조 ~ 안 제12조)

4.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81조, 제86조의2, 제88조, 제89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농어촌민박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16호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장)
- 회부일자 : 2026. 1. 19.

2. 제안이유

- 장성군 북부(북일·북이·북하면) 지역의 화재 및 각종 사고에 긴급 대처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 북이119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 현황

- 사업명 : 장성소방서 북이119 지역대 청사 신축
- 대상지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76-94
- 사용면적 : 총 3,998㎡ 중 2,000㎡
- 소유자 : 장성군수
- 사용자 : 전라남도지사
- 허가조건
 - 허가일로부터 5년(소방관서 폐쇄 시까지 5년마다 연장)
 - 공용사업용으로 신축부지 사용료 면제
 - 사용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 사용조건 변경 시 장성군수 승인
 - 유지·관리상의 하자나 문제 발생 시 비용은 전라남도지사 부담
 - 사용기간 종료 시 최종 사용허가 상태로 반환

나. 청사 신축 및 소방력 배치(안)

- 추진주체 : 전라남도
- 건축규모 : 약 400㎡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1동 2층
- 층별구성 : 1층(차고, 사무실, 대기실), 2층(의소대 사무실, 통신실 등)
- 소요사업비 : 14억원(전라남도 예산)
- 소방력 : 인원 9명, 장비 2대(중형소방펌프차, 구급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장성군 북부(북일·북이·북하면) 지역의 화재 및 각종 사고에 긴급 대처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이 119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자 한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717호
- 제출일자 : 2026. 1. 16.
- 제출자 : 장성군수(교통에너지과장)
- 회부일자 : 2026. 1. 19.

2. 제안이유

- 어르신 택시 바우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통비 지원 연령 확대(안 제7조제5호)
 - (현행) 80세 이상
 - (개정) 75세 이상

4. 관련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2 제2항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어르신 택시 바우처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